

수신 대한태권도협회
(경유)

제목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소위 '담합', '카르텔')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 발송, 설명회 개최 및 이메일 링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 하여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변경·유지하거나, 상품의 생산량·출고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이하 생략)
-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하 생략)

4. 최근 전국 각 지역 태권도장들이 교육비를 동일·유사하게 인상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 태권도장들의 담합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의심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각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과 제재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귀 협회의 소속 지부 및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적극 전파·안내하시어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법 위반 유형 예시

- 둘 이상의 지역 태권도장들이 공동으로 교육비 등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위반)
-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구성사업자들의 교육비 인상, 사은품 지급조건 등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는 행위(법 제51조 위반)
- 사업자단체가 기존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단체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51조 위반) 등

위반시 제재 내용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42조 및 제43조, 제52조 및 제53조 등)

6. 부당한 공동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390호), 「사업자단체 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35호) 등을 참조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044-200-4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사무관 **석태웅** 카르텔조사과 전결2023.1.2.
과장 **안남신**

협조자

시행 카르텔조사과-3 (2023. 1. 3.) 접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전화번호 044-200-4557 팩스번호 044-200-4579 / ultrastw66@korea.kr / 대국민 공개

더불어 잘사는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